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520318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박일섭, 전승환

피고B

변론 종결2024. 8. 29.

판결 선고2024.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C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800,000,000원 및 1,32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1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1,500,000,000원	2011. 10. 18.	2011. 10. 14.	1,800,000,000원
2	우량기업플러스론	1,100,000,000원	2010. 2. 3.	2011. 12. 3.	1,320,000,000원

나. C는 수원지방법원 2012회합76호로 2012. 11.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은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으며, C는 2013. 8.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2015. 4.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C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합17호로 2015. 4.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2015. 6. 1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원본채권 및 이자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2) 하였으며, 2015. 6. 24. 채권조사 후 파산관재인이 이의한 이자채권을 제외한 원본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고, C는 2018. 5. 23. 파산종결결정을 받았다.

소매금융일반대출	1,500,000,000	미수이자	101,760,023
지연손해금	1,500,000,000	2013-03-22	2015-04-20
우량기업플러스론	688,020,587	미수이자	61,601,332
지연손해금	688,020,587	2013-03-22	2015-04-20

다. 피고가 연대보증한 C의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2023. 3.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위 각 근보증한도액을 초과하였고, 원고는 2023.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소매금융일반 자금대출(기 타 대기업통장 대출)	1,500,00 0,000	101,760 ,023	2013-0 3-22	1,495,26 2,023	101,760 ,023	2,104,82 2,298	14. 02	2,206,58 2,321	3,701,84 4,344
우량기업플러	688,020,	61,601,	2013-0	688,020,	61,601,	979,398,	14.	1,040,99	1,729,02

소매금융일반 자금대출(기 타 대기업통장 대출)	1,500,00 0,000	101,760 ,023	2013-0 3-22	1,495,26 2,023	101,760 ,023	2,104,82 2,298	14. 02	2,206,58 2,321	3,701,84 4,344
스론(폴리스 고)	587	332	3-22	587	332	245	2	9,577	0,164
합계	2,188,02 0,587	163,361 ,355		2,183,28 2,610	163,361 ,355	3,084,22 0,543		3,247,58 1,898	5,430,86 4,50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회생절차 폐지일인 2015. 4. 21. 또는 파산절차에서의 최후배당일인 2018. 3. 7.로부터 진행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3)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목록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제32조 제1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및 회생채권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255조 제1항),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 제165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2013. 8. 14. 자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관리인의 회생채권자목록 제출 시 또는 원고의 회생채권신고 시 중단되었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2013. 8. 14. 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를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채권을 제외한 원본채권만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6. 17.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모두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상 그 소멸시효는 다시 중단되었고, 이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2018. 5. 23.까지 존속되었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재민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2) 미수이자란 기재 금액은 2023. 3. 21.까지 발생한 이자로 보인다.

3) 피고는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자채권 중 특정 부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4. 2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